

확진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안내문

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자체를 권고드리며,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❖ (대상) 공단에서 연 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접수하고,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(병원생활치료센터)중에 있는 수험자
 -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확진자 시험응시 제한

❖ (평가방법별 조치사항)

| 구분 | 필기시험 (필기, 필답형 실기, 면접) | 실기시험 (작업형, 복합형) |
|-----------|--|--|
| 대상 종목 | ◆ 연 1회 시행종목 (상세 종목은 첨부 참조) | |
| 대상자 | ◆ 확진자 중 신청자 | ◆ 확진자 중 완치 판정을 받은 자 (신청 시 확진자에 한함) |
| 조치 사항 | ◆ 입원중인 병원·생활치료 센터에서 시험응시 | ◆ 응시기회 보장 ① 필기면제만료자는 필기면제기간 연장 조치 ② 시험기간 내 시험일·시험장소 변경 조치 (일정 가능 시) ③ ② 조치 불가 시, 별도시험일을 지정 하여 시험응시 조치 |
| 시험 응시일 | ◆ 해당종목 시험일 | ◆ (시험일·시험장소 변경) 격리해제 후 해당 회차 시험기간 내 가능일자 ◆ (별도시험일 지정) 공단에서 임의지정한 시험일자 |
| 제출 서류 |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 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②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허서 |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·이용 동의서 |
| 신청 기한 | ◆ 시험시행일 3일전 18시까지(주말제외) ※ 단,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,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(시험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) | |
| 신청 방법 | ◆ 공단에 시험응시 희망의사 고지(유선) ◆ 공단대표 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| |
| 안내 | ◆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(유선, 문자 등) | |
| 비고 | - | ◆ 신청자 중 격리해제 후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지는 해제 사실 즉시 공단에 통보 ◆ 전문자격시험은 관계법령 및 소관부처 의견에 따라 별도 조치 |

☞ 확진자 응시 신청 연락처 및 메일 주소

◆ 사회복지사 : ☎ 052-714-8386, ✉ exam@hrdkorea.or.kr

❖ **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(필기, 필답형, 실기, 면접)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병원·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할 것을 방역 당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**

-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상기 시험응시 신청기한, 제출서류·방법 준수
- 단,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 할 수 있음

시도별 시험 응시 가능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목록 (2021. 08. 03 기준)

※ 아래 생활치료센터는 '21. 8. 23. 기준으로,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※ 감염병전담병원은 시·도에서 제출자료를 취합한 것으로,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| 지역 | 생활치료센터 | 감염병전담병원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울 | (남산)서울유스호스텔 | 서울의료원 |
| 부산 |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| 부산시의료원 |
| 대구 | - | 대구동산병원 |
| 인천 | 인천하나글로벌캠퍼스 | 인천광역시의료원 |
| 광주 | 광주소방학교생활관 | 빛고을 전남대병원 |
| 대전 | LH토지주택연구원 | 을지대학교병원 |
| 울산 | 부산은행연수원 | 울산대학교병원 |
| 세종 | LH토지주택연구원 |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|
| 경기 | SK 인재개발원 |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|
| 강원 | - | 강릉의료원, 원주의료원 |
| 충북 | LH토지주택연구원 | 충주의료원 |
| 충남 | LH토지주택연구원 | 홍성의료원 |
| 전북 | - | 남원의료원 |
| 전남 | - | 목포시의료원 |
| 경북 | - | 포항의료원 |
| 경남 | 경남 KB손해보험연수원 | 마산의료원 |
| 제주 | - | 제주대학교병원 |

국가전문자격시험 확진자 시험응시 신청(접수)서

수험자 인적사항

| | | | |
|------|---|--------|---|
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- |
| 휴대전화 | - | 이메일 | |

접수한 시험정보

| 접수한 시험 정보 | | | | |
|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필·실기 구분 | 회차 | 등급 및 종목 | 시험일 | 시험장소 |
| 필기 | 20 | 사회복지사 1급 | 2022. 1. 22(토) | |

작성방법 및 안내사항

- ❖ (대상)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(필기, 면접) 중 연 1회 시행하는 시험에 접수하고,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(병원·생활치료센터)중에 있는 수험자
 - ☞ 연2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헌법재판소 취지 및 시험·방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대로 확진자 응시제한
 - ※ 단, 연1회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작업형 시험 수험자는 공단 담당자에게 신청 시 응시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 조치 가능
 - ❖ (시험응시 신청기간) 시험시행일 3일전 18시까지(단,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,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<시험준비 여건에 따라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>)
 - ❖ (제출서류) ①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② 주치의 확인 및 시설사용 허가서
 - ❖ (제출방법) 시험 담당자에게 시험응시 신청의사(유선)를 알리고,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
 - ※ 시험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주소
- ◆ 사회복지사: ☎ 052-714-8386, ✉ exam@hrdkorea.or.kr
- ❖ (시험응시 방법) 입원중인 병원·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시험응시
 - ❖ (안내) 시험시행일 전 개별 안내(유선, 문자 등)

유의사항

- ❖ 시험응시 가능 확진자 대상이 아닐 경우, 관련 조치 불가
- ❖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
- ❖ 시험응시 신청 후 확진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
- ❖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 불가할 수 있음
- ❖ 확진자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본인은 상기와 같이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시험응시를 신청하며,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조치가 불가할 경우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2 . . . 신청자: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붙임 5**시설사용 허가 확인서****확진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시설사용 허가 확인서** 수험자 시험정보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성명 | | 생년월일 | |
| 시험명 |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| | 시험일 |

 수험자 시험응시 여부 관련 주치의 확인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수험자의 시험응시 가능여부 | 가능(), 불가() | 사유(불가 시) | (서명 또는 인) |
| | | 주치의(성명) | |

 시설사용 허가 관련 병원 관계자 확인사항

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위해 다음 시험프로세스별 병원측 협조사항을 참고하시어 외부시험위원의 확진자 입원실 입실 및 해당 입원실의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외부시험위원 입실 | 가능(), 불가() | 사유(불가 시) | |
| 시설사용 가능여부 | 가능(), 불가() | 사유(불가 시) | |
| 담당자 연락처 | ☎ | | |

❖ 시험프로세스별 병원 협조사항

| 구분 | 주요내용 | 병원 협조사항 |
|-------------|---|---|
| 시험위원 입실 | ◆ 공단에서 위촉된 시험위원이 확진자 입원실 방문 | ◆ 해당 기관(시설) 의료진에 준하여 시험위원 방역조치 실시 |
| 수험자 시험준비 | ◆ 시험에 응시하는 확진자의 좌석 정리 등 시험시행을 위한 준비 | ◆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|
| 수험자 교육 | ◆ 시험위원이 매뉴얼에 따라 수험자 교육 실시 | ◆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|
| 문제지 지급 | ◆ 병원 관계자가 문제지, 답안카드(지) 등을 지급하도록 조치 | ◆ 가급적 주치의 또는 담당 의료진 등이 직접 전달 |
| 시험 시행 | ◆ 수험자는 시험 시행 ◆ 시험위원은 부정행위 감시 | ◆ 응급조치사항 발생 대비 |
| 문제지 회수 | ◆ 시험 종료 선언 후 병원 관계자가 답안 카드(지) 또는 문제지를 회수하도록 조치 (자격별 상이함) | ◆ 확진자와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치의 등이 회수하여 시험위원에게 전달 |
| 시험종료 | ◆ 시험위원은 소속기관으로 복귀 | ◆ 확진자 건강 관리 |

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확진자 시험응시에 대한 주치의 확인사항과 시설사용 허가 관련 확인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2022 . . .

기관의 장 :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